

# 심 사 보 고

1997. 3. 18  
교육사회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7년 2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1997년 2월 22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7. 3.17) 상정  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 교육청 관리국장 신재철 )

가. 제안 이유

- 국내여비규정 개정 ('96.12.31) 에 따라  
용어변경 및 여비기준액을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 골자

- 여비의 종류중
  - 현지교통비를 일비로,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고
- 여비지급 단가를 현실화하여 변경함
  - 일 비 : 6,500원 → 10,000원,      숙박료 : 37,500원 → 41,000원

### 3. 검토보고 ( 교육사회 전문위원 김영만 )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 본 개정조례(안)은

- '96.12.31일 개정된 (대통령령인)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용어정비와 여비지급 단가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※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

4. 질의 및 답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 (참석 6명, 찬성 6명)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# 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
- 신구조문 대비표